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임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1308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국인학교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위치 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1호나목을 본문의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위반횟수를 한 회로 본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학교가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입학시켜 「초·중등 교육법」 제6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감은 외국인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입학시킨 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입학행위"라 한다)를 적발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를 한다. 다만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한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모집정지를 아니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모집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두 명 이상 입학시킨 경우는 그 위반횟수를 한 회로 본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모집정지 기간은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개시하되, 외국인학교가 모집정지 기간 중에 다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모집정지 기간은 이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처분에 따른 모집정지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2. 개별기준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처분기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u>지방자치단체</u>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1. ~ 3. (생략)	제4조(설립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외국정부-----.</u>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의 재산 임차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국제화담당관	
연 락 처	044-203-6769